



의안번호	제 2015 - 24 호
보 고 연 월 일	2015. 7. 6. (제6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90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II. 제91차 전체 회의	8
1. 일시 · 장소	8
2. 참석자	8
3. 주요 안건	8
4. 회의 요지	8
III. 향후 일정	13

별첨	김세종, “제5기 양형기준 설정 ·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김현아, 오기찬, “제5기 양형기준 설정 · 수정 대상 범죄군 검토”
	김현아, “제5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범죄 관련 추가 검토”
	김세종, “제5기 양형기준 설정 ·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II”
	김현아, “근로기준법위반 범죄군 추가 검토”
	오기찬, “과실치사상 범죄군 추가 검토”,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
	김현아, “제5기 양형기준 대상 확정 및 일정”

I. 제90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6. 1.(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희 회신 결과 검토¹⁾
-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I)

4. 회의 요지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에 관한 의견

(1)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가) 도주 · 범인은닉범죄(증거인멸범죄 포함)

- 도주, 특수도주,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은닉, 증거인멸 등
- 발생빈도가 낮은 편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됨
- 위증, 무고범죄군과 함께 사법질서방해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완비 필요

1) 양형위원회 제65차 전체회의에서 이미 보고함

- 다만, 증거인멸범죄는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방식으로 설정

(나) 통화·유가증권범죄

- 통화위·변조, 유가증권위·변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등
- 발생빈도 및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하 같음) 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법정형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아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이 요구됨

(다)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정량미달 판매, 정량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등
- 발생빈도 및 징역형 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침해하며,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있음

(라) 대부업법위반범죄

-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그 밖의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징역형 선고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경제적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있음

(2) 설정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부분

(가) 불법집단행동범죄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 다수의견 : 제외

- 집시법위반범죄의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범죄이기는

하나, 양형보다는 집회·시위 자유와의 관계에서 유·무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임

-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고, 법정형도 낮은 편이며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경우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설정의 필요성도 적음

○ 소수의견 : 포함

- 사건 수가 많지는 아니하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군
- 실형 및 집행유예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반복하여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가담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 있음
- 과거에도 발생빈도가 낮은 지식재산권, 방화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설정한 선례 있음

(나) 명예훼손범죄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 다수의견 : 제외

-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범죄이기는 하나, 양형보다는 유·무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임
- 벌금형 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특히 법정형 상한이 1년에 불과한 모욕죄가 전체 약 44%를 차지함)

○ 소수의견 : 포함

- 최근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발생빈도 증가 추세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군이고,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으로 일반예방 필요

(다) 과실치사상범죄

-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등

○ 다수의견 : 제외

- 상세한 내용은 제91차 전체회의에서의 추가 논의 참조

○ 소수의견 : 포함

(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군

- 직무유기, 직권남용,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등

○ 다수의견 : 제외

- 범죄유형이 다양한데, 사건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각 유형별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양형편차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거나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

○ 소수의견 : 포함

- 사건 수가 많지는 아니하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군임
- 뇌물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완비 필요

(3)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이하의 범죄들은 사건 발생빈도, 범죄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이 일치됨
- 공정거래범죄
- 주거침입범죄
- 환경범죄
- 병역법위반범죄
- 국가보안법위반범죄

(4) 대상 범죄군 포함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부분

- 차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추가 통계자료를 확인한 후 대상 범죄군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나.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에 관한 의견

(1) 수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가) 교통범죄

- 신체·생명침해 결과 발생범죄로서 시행 이후 상당기간 시행성과가 축적되었고, 처단형과 권고 형량범위 사이의 불균형 등에 관한 지적도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적절성에 관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사망사건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의 조정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나) 공무집행방해범죄

- 시행 이후 상당기간 시행성과가 축적되었고, 폭력범죄 양형기준과의 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의 조정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다)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상습절도 유형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함

(라) 장물범죄

-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상습장물 유형에 관하여 함께 수정을 논의할 필요 있음

(마) 위증범죄

-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증거인멸범죄를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 대상에 포함

(2) 수정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부분

(가) 뇌물범죄

○ 다수의견 : 제외

- 양형기준 준수율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

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현실적인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수의견 : 포함

-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군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정 논의 필요함

(나) 횡령·배임범죄

○ 다수의견 : 제외

- 검찰 전문위원측 통계자료는 일부 사건에 관한 것으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설사 이득액이 큰 구간에서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뇌물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률의 개정이나 국민적 공감대의 변화 등 현실적 수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소수의견 : 포함

- 이득액이 큰 구간에서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정 논의 필요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기업 관행 시정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도록 현행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에서 새로운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 발굴 및 반영 필요함

(다) 식품·보건범죄

○ 다수의견 : 제외

- 양형기준 수정(2015. 5. 15.부터 시행) 당시 법률 개정의 취지와 법정형의 차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양형인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양형인자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양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으므로, 당분간 시행경과를 지켜볼 필요 있음

○ 소수의견 : 포함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체계의 재구성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수정

이 필요함

- 양형기준 시행 성과를 분석 후 신규 양형인자를 발굴하여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도 있음

(라) 폭력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공갈범죄

○ 제외 의견과 포함 의견 동수

- 상세한 내용은 제91차 전체회의에서의 추가 논의 참조

II. 제91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6. 15.(월) 16:00 ~ 18: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II)

4. 회의 요지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에 관한 의견

(1)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지난 제90차 전체회의에서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된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이외에 아래 근로기준법위반범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가)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금지의무 위반, 해고 등 제한의무 위반, 취업방해 금지의무 위반, 근로감독관의 위법사실 고의 묵과 행위, 금품청산의무위반, 임금지급의무위반, 도급사업 또는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의무 위반, 휴업수당지급의무위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 위반, 여성·미성년자 사용금지의무위반, 갱내근로금지의무위반 등

- 발생빈도, 국민적·사회적 관심도 등이 높은 범죄군
- 범죄유형이 매우 복잡·다기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러나, 적용법조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실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09조 및 제110조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근로기준법 제107조(법정형 5년 이하)위반, 제109조(3년 이하) 중 제3장(임금),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여성과 소년)위반, 제110조(2년 이하) 중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여성과 소년) 위반에 한정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설정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부분

(가) 과실치사상범죄

-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등

○ 다수의견(8인) : 제외

-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낮고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과실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적절한 양형인자를 제시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개별 과실범죄에 적용되는 특별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설정 대상범죄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고, 개별 특별법에 규정된 의무위반범죄와의 관계 설정도 용이하지 않음
- 다양한 유형의 과실범죄들을 교통범죄와 달리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 피해자가 다수인 안전사고의 경우 법정형의 한계(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금고 5년 이하)로 적정한 권고 형량범위 제시가 용이하지 아니하며, 대부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

용되지도 아니함

○ 소수의견(3인) : 포함

- 최근 세월호,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 등 안전사고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음
-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안전사고 발생이 적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실무상 필요성도 높음
- 과실범죄군의 기본적인 유형이고, 징역형의 선고 건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 추세이며, 사회적 관심도 및 실무상 필요성도 높은 범죄군으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 다양한 과실범죄에 적용가능한, 적절한 양형인자가 제시될 수 있음

(3)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전회에서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공정거래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병역법위반범죄, 국가보안법위반범죄 이외에 전회에 포함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범죄들 중 불법집단행동범죄, 명예훼손범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군에 관하여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서 제외하기로 함
- 그 외 정치자금법위반범죄에 관하여도 검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외하기로 의견이 일치됨
 -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및 선거권·피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정치인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양형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
 - 그러나, 범죄유형이 매우 복잡·다기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사건 발생빈도 증가에 비해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음
 - 분석결과 사건 발생빈도는 민노당 후원당비 수사로 2011년에만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대체로 연간 30 내지 400건대에 불과함

나.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에 관한 의견

(1) 수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교통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절도범죄, 장물범죄, 위증범죄

(2) 수정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부분

(가) 폭력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공갈범죄

- 다만, 폭력행위처벌법이 개정될 경우 5기 양형위원회에서 폭력범죄, 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를 수정 대상범죄로 추가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제시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함

○ 다수의견(7인) : 제외

- 위헌결정이 예상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에는 동의함
- 그러나,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헌의 범위와 법률개정의 태양을 쉽게 예측할 수 없음
-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하는 경우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위헌결정에 대한 예단을 주거나 양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음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은 4기에서 설정된 것으로서 5기에서 곧바로 수정 대상 범죄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소수의견(5인) : 포함

-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범, 특수범 관련 규정이 상당 부분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형법상 상습범, 특수범 규정과 중복되어 있

- 고, 법정형의 차이도 상당하여 위헌논란 및 법개정 움직임 있음
- 폭력행위처벌법은 특정범죄가중법과 함께 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5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켜 법률 개정 즉시 수정 논의를 시작함이 바람직함
 - 위헌결정 전에 폭력범죄 등을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습절도, 상습장물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을 논의하면서, 폭력성범죄 양형기준 중 상습범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수정을 논의하는 것은 상습범에 관한 양형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 대상 범죄군 포함에 대외적 명분이 부족한 것도 아님
 - 폭력범죄, 공갈범죄만 수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되, 향후 철폐·감금·유기·학대범죄 등 4기 설정 3개 범죄군은 법률 개정 후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한 방안임

(3) 수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전회에 포함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범죄들 중 뇌물범죄, 횡령·배임범죄, 식품·보건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서 제외하기로 함

다.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일정에 관한 의견

(1) 전반기(2015. 4. 27. ~ 2016. 4. 26.)

(가) 양형기준 설정

- 도주·범인은닉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나) 양형기준 수정

- 절도범죄, 장물범죄, 위증범죄

(2) 후반기(2016. 4. 27. ~ 2017. 4. 26.)

(가) 양형기준 설정

○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나) 양형기준 수정

○ 교통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 폭력행위처벌법 등이 개정되거나 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폭력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공갈범죄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로 추가 선정하고 후반기에 수정작업을 진행할 필요 있음

I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92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